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17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 송옥주 • 권칠승 • 한정애

이수진 • 한민수 • 김남희

박 정·전종덕·박해철

황명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호 등 여성가족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함.

그런데 '이용자'라는 표현이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뿐만 아니라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함. 결국, '이용자'의 범위를 결혼중개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한정할 경우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중개수수료 및 해당 중개업체가 적법한 업체인지 여부 등을 사전에알기 어려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됨.

이에 결혼중개업 수수료·회비, 신고번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누구든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결혼중개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의 편 의를 증진하고 알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 법률 제 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이용자가"를 "누구든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제8조(신고필증 등의 게시)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결혼중개업자가 인터넷 홈	②		
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 결혼			
중개업 수수료・회비 등을 기			
재한 표, 신고번호 또는 등록번			
호 등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			
는 사항을 <u>이용자가</u> 쉽게 확인	<u>누구든지</u>		
할 수 있도록 인터넷 홈페이지			
에 게시하여야 한다.			